

2007. 3. 23.(금)

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

# 심사보고서
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#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3. 6.  
나. 회부일자 : 2007. 3. 6.  
다. 상정일자 : 2007. 3. 13.(제134회 임시회 자체행정위원회 제2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인적자원팀장 진한종)

### 가. 제안사유

○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 되도록 개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”로 하고

○ 제4조제1항 중 “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”을 “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”으로 하며

○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한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한다.

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- 본조례는 2007. 3.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6. 12. 15일부터 2007. 1. 4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07. 1. 5.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, 조례 제정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 규정하는 한편,
-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 객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및 당해 외부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 하였으며
-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.

## 4. 질의 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 요지

- 현재까지 본 조례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된 사무가 어떤것이 있는지? (강현삼 의원)
- 선정심의위원회는 상시 운영 되는 것인지요?(강현삼 의원)
- 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도 포함하겠다하는데 전문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? (박성하 의원)

### 나. 답변요지 (인적자원팀장 진한종)

- 2004년부터 청풍 번지점프장, 문화재단지 매점, 종합복지관, 어린이집, 덕동 소규모 농촌휴양지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.
- 사안 발생시 마다 수시로 운영되며, 위탁사무가 발생하는 부서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위촉이 합리적이므로 수시운영이 바람직하다 판단 됩니다.
- 전문가는 내부범위를 벗어나서 학계, 즉 대학교수 아니면 관련분야에 오래 종사한 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 생각합니다.

## 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## 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## 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